

#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1-1. 행정인건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 1-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일반회계 기준)

1-1-1. 재정자립도 : 27.6%

1-1-2. 재정자주도 : 72.2%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 22.5%(193,230백만원)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체	보조	비고
편성액	504,158	356,142	
비율	58.6%	41.4%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12.1%(104,446백만원)

1-1-6. 예비비 확보율 : 2.3%(19,782백만원)

- 일반예비비 1.0%(8,603백만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11,179백만원)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65.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7,044백만원
- 인건비 82,901백만원



## 1-2. 통합 부채



# 통합부채 현황(2017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합부채	104,443,205	104,443,205	0	0
유동부채	20,258,245	20,258,245	0	0
단기차입금	0	0	0	0
단기차입금	0	0	0	0
단기예수금	0	0	0	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0	0	0	0
유동성장기차입금	0	0	0	0
유동성장기차입금현재가치할인금	0	0	0	0
유동성지방채증권	0	0	0	0
유동성지방채할인발행차금	0	0	0	0
유동성장기예수금	0	0	0	0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0	0	0	0
기타유동부채	20,258,245	20,258,245	0	0
일반미지급금	8,894,989	8,894,989	0	0
선수금	0	0	0	0
선수수익	7,463	7,463	0	0
단기예수보관금	2,509,214	2,509,214	0	0
일반미지급비용	930	930	0	0
국공유재산매각수입금	0	0	0	0
유동성장기미지급금	8,645,825	8,645,825	0	0
유동성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 할인차금	0	0	0	0
선수취득세	0	0	0	0
선수주민세	0	0	0	0
배출부채	199,824	199,824		
기타유동부채	0	0	0	0
장기차입부채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84,184,960	84,184,960	0	0
퇴직급여충당부채	7,715,269	7,715,269	0	0
퇴직급여충당부채	6,970,087	6,970,087	0	0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	-28,469	-28,469	0	0
기타비유동부채	76,469,691	76,469,691	0	0
장기예수보증금	786,930	786,930	0	0
장기선수수익	0	0	0	0
장기미지급금	115,826,478	115,826,478	0	0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40,143,717	-40,143,717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 1-3. 우 발 부 채



# 우발부채현황[2017년]

(단위 : 천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부지매입확약	해	당	없
	토지리턴제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의무지출과재량지출의비중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의무지출							재량지출		
		계	비율	법정의무	비율	보조의무	비율	이자의무	비율	재량지출	비율
계	1,006,000,000	495,911,193	49.30%	139,956,864	13.91%	355,954,329	35.38%	0	0.00%	510,088,807	50.70%
일반회계	860,300,000	475,153,295	55.23%	133,755,366	15.55%	341,397,929	39.68%	0	0.00%	385,146,705	44.77%
특별회계	145,700,000	20,757,898	14.25%	6,201,498	4.26%	14,556,400	9.99%	0	0.00%	124,942,102	85.75%
공기업특별회계	57,900,000	8,663,105	14.96%	4,221,105	7.29%	4,442,000	7.67%	0	0.00%	49,236,895	85.0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3,300,000	7,813,962	23.47%	3,371,962	10.13%	4,442,000	13.34%	0	0.00%	25,486,038	76.53%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4,600,000	849,143	3.45%	849,143	3.45%	0	0.00%	0	0.00%	23,750,857	96.55%
기타특별회계	87,800,000	12,094,793	13.78%	1,980,393	2.26%	10,114,400	11.52%	0	0.00%	75,705,207	86.22%
수질개선훈별회계	5,070,000	5,015,528	98.93%	0	0.00%	5,015,528	98.93%	0	0.00%	54,472	1.07%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477,000	2,456,807	99.18%	1,980,393	79.95%	476,414	19.23%	0	0.00%	20,193	0.8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843,000	0	0.00%	0	0.00%	0	0.00%	0	0.00%	843,000	100.00%
세마을소득특별지원영특별회계	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주택사업특별회계	780,000	200,000	25.64%	0	0.00%	200,000	25.64%	0	0.00%	580,000	74.36%
치수사업특별회계	14,273,500	601,458	4.21%	0	0.00%	601,458	4.21%	0	0.00%	13,672,042	95.7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080,000	0	0.00%	0	0.00%	0	0.00%	0	0.00%	7,080,000	100.00%
대지보상특별회계	270,000	0	0.00%	0	0.00%	0	0.00%	0	0.00%	270,000	100.00%
감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3,365,000	3,821,000	8.81%	0	0.00%	3,821,000	8.81%	0	0.00%	39,544,000	91.19%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300,000	0	0.00%	0	0.00%	0	0.00%	0	0.00%	13,300,000	100.00%
담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41,500	0	0.00%	0	0.00%	0	0.00%	0	0.00%	341,500	100.00%



**1-5. 재정운용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해당없음]**



##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해당없음]**



## 1-7.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경북 김천시

## □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특광역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I. 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7.04%	10.88%	8.87%	-6.65%	4.83%	8.00%	11.32%	38.58%
	2.경상수지비율	52.13%	56.02%	59.75%	43.19%	53.62%	58.61%	63.83%	143.85%
	3.관리채무비율	2.61%	3.13%	3.60%	0.00%	0.37%	2.58%	5.24%	14.27%
	4.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22.08%	24.69%	29.88%	2.53%	10.13%	24.87%	44.33%	104.69%
	5. 통합유동부채비율	0.00%	3.91%	1.25%	0.00%	0.00%	0.00%	0.00%	29.81%
	6.공기업부채비율	0.11%	0.04%	17.22%	0.00%	0.64%	8.03%	21.08%	219.93%
	7.총자산대비영업이익률	-2.32%	-1.69%	-2.91%	-10.71%	-4.51%	-2.91%	-1.55%	4.08%
II. 재정여유도	8. 지방세수입비율	7.62%	7.66%	17.38%	3.99%	9.49%	17.50%	23.98%	39.00%
	8-1. 지방세수입증감률	11.69%	15.82%	9.33%	-7.47%	7.44%	8.72%	11.15%	20.90%
	9. 경상세외수입비율	0.95%	1.02%	2.13%	0.69%	1.36%	1.87%	2.85%	7.26%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4.03%	10.92%	7.87%	-10.76%	4.62%	7.68%	11.17%	23.74%
	10. 지방세징수율	96.44%	96.79%	95.41%	92.01%	94.64%	95.42%	96.18%	98.37%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64	1.0032	1.0026	0.9876	0.9978	1.0013	1.0053	1.0317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52%	0.57%	1.78%	0.24%	0.93%	1.77%	2.39%	4.1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9.98%	-0.74%	20.06%	-6.50%	13.82%	17.85%	25.22%	59.81%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	0.13%	0.11%	1.33%	0.13%	0.61%	0.98%	2.02%	4.28%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32.95%	-17.13%	8.46%	-90.10%	-0.18%	6.20%	13.08%	106.94%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0	0.9881	0.4000	1.0000	1.0000	1.0000	1.0632
	14. 지방보조금비율	7.94%	10.71%	8.89%	4.25%	7.23%	8.67%	9.91%	20.52%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16.74%	4.43%	-11.99%	-53.45%	-20.83%	-10.81%	-0.46%	15.13%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25%	0.92%	3.38%	0.48%	2.07%	3.08%	4.45%	9.68%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2.75%	11.18%	46.89%	-75.03%	-6.75%	22.88%	47.86%	932.74%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8.47%	103.62%	9.74%	-11.49%	1.74%	7.69%	13.79%	64.13%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22.73%	88.42%	14.21%	-24.82%	8.07%	12.66%	19.45%	46.06%
	18. 행사축제경비비율	0.55%	0.69%	0.78%	0.23%	0.57%	0.72%	0.94%	2.38%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20.60%	1.50%	-4.76%	-43.79%	-18.56%	-8.07%	1.68%	176.70%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35.00%	5.95%	-6.09%	-67.61%	-14.57%	-3.42%	4.22%	80.56%	

※ 2017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정분석 결과 자료임.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단체별 보고서는 12월 배부예정.



## **1-8. 지방세 지출현황**



---

---

# 지방세지출보고서

## (2017년 결산 기준)

---

---



김 천 시

## ◆ 목 차 ◆

I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현황 개요 .....	1
1. 비과세 · 감면 총괄표 .....	1
2. 기능별 비과세 · 감면 현황 .....	1
3. 세목별 비과세 · 감면 현황 .....	2
4. 비과세 ·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	2
II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	3
1. 일반공공행정 .....	3
2. 공공질서 및 안전 .....	5
3. 교육 .....	6
4. 문화 및 관광 .....	8
5. 환경보호 .....	10
6. 사회복지 .....	10
7. 보건 .....	15
8. 농림해양수산 .....	16
9. 산업 · 중소기업 .....	20
10. 수송 및 교통 .....	25
11. 국토 및 지역개발 .....	28
12. 과학기술 .....	32
13. 국가 .....	33
14. 외국 .....	34
15. 기타 .....	35

#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7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10,514,495,140
	비과세	6,397,986,340
	감면	4,116,508,800
지방세 징수액(B)		83,766,910,810
비과세·감면율(A/A+B)		11.2

##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7년(결산)	비중
<b>총 계</b>		10,514,495,140	100.0
1	일반공공행정	3,248,345,250	30.9
2	공공질서 및 안전	96,425,160	0.9
3	교육	1,084,365,870	10.3
4	문화 및 관광	266,502,790	2.5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958,517,320	9.1
7	보건	58,349,110	0.6
8	농림해양수산	544,399,410	5.2
9	산업·중소기업	85,924,340	0.8
10	수송 및 교통	6,645,800	0.1
11	국토 및 지역개발	1,257,342,190	12.0
12	과학기술		
13	국가	2,833,816,260	27.0
14	외국		
15	기타	73,861,640	0.7

### 3. 세목별 비과세 · 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7년(결산)	비중
<b>총 계</b>		10,514,495,140	100
보통세		10,514,495,140	100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902,878,250	8.6
	재산세	8,834,547,570	84.0
	자동차세	777,069,320	7.4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4. 비과세 ·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6년(결산)	'17년(결산)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2,982,601,260	2,950,332,170	-32,269,09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649,670	672,910	23,24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50,056,820	51,282,010	1,225,19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204,942,020	212,147,410	7,205,39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32,388,970	33,910,750	1,521,78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78,858,390	96,425,160	17,566,77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36,060	2,027,400	-8,66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226,494,550	222,650,100	-3,844,450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83,510	293,280	9,77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856,736,880	859,395,090	2,658,21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257,514,320	261,402,420	3,888,10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5,206,190	5,100,370	-105,8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34,270,000	33,440,000	-830,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434,666,740	438,516,810	3,850,07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9,003,090	9,677,140	674,05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35,960,670	38,279,860	2,319,19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6,696,920	9,567,690	2,870,77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8,513,210	117,524,940	-988,27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03,691,200	234,825,150	131,133,95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중에 대한 감면	1,800,010	2,488,060	688,05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52,158,340	51,287,790	-870,550

감면 유형	'16년(결산)	'17년(결산)	증감액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22,683,610	22,909,880	226,27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84,319,600	58,349,110	-25,970,49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353,095,870	352,839,120	-256,75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7,113,460	7,751,960	638,50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32,512,980	34,568,060	2,055,08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9,642,580	9,340,980	-301,60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26,784,600	129,388,080	2,603,48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10,617,430	10,511,210	-106,22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25,075,440	20,618,050	-4,457,39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522,710	6,027,290	-495,42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2,406,050	1,613,830	-792,220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8,182,210	2,067,030	-16,115,180
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61,782,440	55,598,140	-6,184,30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5,795,000	5,849,500	54,50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1,051,180	796,300	-254,88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0	35,540	35,54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278,667,550	484,265,430	205,597,88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580,975,130	674,336,390	93,361,2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18,597,150	98,704,830	-19,892,320
국가에 대한 비과세	2,810,621,720	2,833,066,390	22,444,67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752,500	749,870	-2,63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52,706,940	52,582,730	-124,21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6,332,880	13,347,470	7,014,59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2,266,920	2,295,650	28,73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5,219,980	5,122,940	-97,04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265,960	512,850	246,890

##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일반공공행정</b>		<b>합 계</b>	<b>3,248,345,250</b>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 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2,950,332,17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6,800,000
		재 산 세	2,937,816,230
		자 동 차 세	5,715,940
		지 방 소 득 세	
	지역자원시설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	
2	<b>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취 득 세	
		-	
3	<b>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672,910
		재 산 세	672,910
		지역자원시설세	
		-	
4	<b>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5	<b>정당에 대한 비과세</b> - 정당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②·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6	<b>정당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정당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89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7	<b>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b>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51,282,01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51,282,010
		지역자원시설세	
8	<b>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b>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소 계	212,147,41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12,147,41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 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지역자원시설세	
		-	
9	<b>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b>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b>소 계</b>	<b>33,910,750</b>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 산 세	33,910,750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공공질서 및 안전</b>		<b>합 계</b>	<b>96,425,160</b>
10	<b>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b>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b>소 계</b>	
		취 득 세	
		재 산 세	
		-	
11	<b>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b> -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5②)	<b>소 계</b>	
		취 득 세	
		재 산 세	
		-	
12	<b>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b>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 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세·재산·자동차· 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③)	<b>소 계</b>	<b>96,425,160</b>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96,425,160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	
13	<b>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b> -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②) - (경기 파주)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소 계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교 육</b>		<b>합 계</b>	<b>1,084,365,870</b>
14	<b>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b>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222,650,1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222,650,100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5	<b>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취 득 세	
		-	
16	<b>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93,280
		재 산 세	293,280
		지역자원시설세	
		-	
17	<b>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교육자치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8	<b>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b>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소 계	859,395,09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42⑤)</li> <li>-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li> <li>-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li> </ul>	주 민 세	491,424,250
		재 산 세	367,970,840
		지역자원시설세	
		-	
19	<b>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li> </ul>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0	<b>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li> </ul>	소 계	2,027,40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970,000
		재 산 세	1,057,400
		지역자원시설세	
		-	
21	<b>평생교육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단체에게 생산된 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3④)</li> </ul>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22	<b>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li> <li>-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li> </ul>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문화 및 관광</b>		<b>합 계</b>	<b>266,502,790</b>
23	<b>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b>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b>소 계</b>	<b>261,402,420</b>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11,846,500
		재 산 세	249,555,920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24	<b>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b>소 계</b>	
		지역자원시설세	
		-	
25	<b>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b>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b>소 계</b>	
		주 민 세	
		-	
26	<b>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에 관한登記·등록에 대해서 취득·등록면허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b>소 계</b>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27	<b>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b>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①) -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4②) - 호텔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③) - 보양온천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4④)(삭제)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28	<b>체육진흥을 위한 감면</b>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부산)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이 경륜장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액 중 장외발매소분 세액의 20% 경감 - (제주) 제주경마공원에서 발매한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액 경감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레 저 세	
		-	
29	<b>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소 계	5,100,370
		취 득 세	
		재 산 세	5,100,370
		지역자원시설세	
		-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환경보호</b>	<b>합 계</b>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30	<b>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b>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31	<b>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b>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32	<b>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b> - 해양오염방지 업무용 부동산에 취득·재산세 75%, 교육훈련등시설용 부동산에 취득세 75% 및 재산세 25% 감면,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9)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33	<b>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b> - 녹색건축물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재산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3①) -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사회복지</b>		<b>합 계</b>	<b>958,517,320</b>
34	<b>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b>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 계	33,440,000
		주 민 세	33,440,000
35	<b>장애인에 대한 감면</b>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계	438,516,810
		취 득 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자동차세	438,516,810
		-	
36	<b>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감면</b>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8)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37	<b>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b>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소 계	9,677,140
		취 득 세	
		재 산 세	9,677,140
		지역자원시설세	
38	<b>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b> - 「국민연금법」 제25조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1호) -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2호) -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1호) -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2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1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취득·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2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	
39	<b>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b>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소 계	51,287,79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2,184,500
		재 산 세	49,103,29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40	<b>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④)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41	<b>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b>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38,279,860
		취 득 세	
		재 산 세	38,279,860
		-	
42	<b>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b>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2호)	소 계	9,567,690
		취 득 세	
		재 산 세	9,567,690
		지역자원시설세	
		-	
43	<b>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b>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44	<b>권익증진을 위한 감면</b> - 대한적십자사·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1·3호) -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2호)	소 계	22,909,88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2,909,88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3)		
45	<b>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및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7①) - 산재의료관리원의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세 면제 및 재산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7②)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	
46	<b>노동조합에 대한 감면</b>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법 §26)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47	<b>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b> - 군인·경찰·지방행정·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5①)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5②)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48	<b>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7호)	소 계	117,524,94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174,640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117,350,300		
49	<b>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b>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	소 계	
		취 득 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li> <li>- 보훈병원에 대한 주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li> <li>- 독립기념관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li> </ul>	주민세	
		재산세	
50	<b>주택거래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li> <li>-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2)</li> </ul>	소 계	
		취득세	
		-	
51	<b>임대주택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li> <li>-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li> <li>-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li> <li>-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삭제)</li> <li>-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매기간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삭제)</li> <li>-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4④)(삭제)</li> <li>-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⑦)</li> <li>-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이상임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2①, §31의2②)</li> <li>-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재산세액-(담보대출 금액*60/100*1/10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3)</li> <li>-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li> </ul>	소 계	234,825,150
		취득세	
		재산세	234,825,150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p>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p> <p>-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p>		
52	<p><b>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b></p> <p>-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p> <p>-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p> <p>-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p> <p>-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p>	소 계	2,488,060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488,060
		-	
53	<p><b>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b></p> <p>-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6)</p> <p>-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36의2①)(삭제)</p> <p>- (제주) 어려운가구집지어주기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p>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보건</b>		<b>합 계</b>	<b>58,349,110</b>
54	<p><b>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b></p> <p>-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비과세(지방</p>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세특례제한법 §37, §41① -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주민·지방소득세 면제(조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55	<b>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종료)·재산세·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58,349,110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58,349,110
		-	
56	<b>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	소 계	
		취득세	
		재산세	
		-	
57	<b>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b> -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0)	소 계	
		취득세	
		재산세	
		-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농림해양수산</b>		<b>합 계</b>	<b>544,399,410</b>
58	<b>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b> -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소 계	352,839,120
		취득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6)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 (광주 광산) 평동산업단지예정지구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대전 유성) 대전과학산업단지내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 (경남 양산) 구 웅상읍 내 농지 재산세 50% 감면('09년), 25% 감면('10년) - (경남 진주) 초전·장재공업지역 내 자경농지 재산세 분리과세 - (충남 보령)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자경농지 재산세 과세이연 -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경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등록면허세	
		주 민 세	350,413,000
		재 산 세	2,426,120
		자동차세	
		-	
59	<b>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b>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④) - (경기 광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60	<b>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b> -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용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1호)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2호)	소 계	7,751,9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7,751,96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li> <li>-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li> <li>-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li> <li>-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li> <li>-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li> </ul>		
61	<b>농업법인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li> </ul>	소 계	34,568,06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34,568,060
62	<b>임업인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③)</li> <li>- 임업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li> </ul>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자동차세	
63	<b>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li> </ul>	소 계	9,340,980
		재 산 세	9,340,980
		-	
64	<b>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⑤)</li> <li>-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차량 취득세 면제 (조례)</li> <li>- 직접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재산세 면제(조례)</li> <li>- 지원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 50%</li> </ul>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감면(조례)		
65	<b>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b>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 어업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66	<b>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b>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67	<b>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b>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감면(75%) (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등록면허세	
		-	
68	<b>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b>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②)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 농업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4의2)	소 계	129,388,08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129,388,080
		-	
69	<b>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b>	소 계	
		취 득 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①)</li> <li>-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100%)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15②)</li> </ul>	재 산 세	
		-	
70	<b>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특산품생1 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 가공산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li> </ul>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1	<b>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li> </ul>	소 계	10,511,210
		취 득 세	
		재 산 세	10,511,210
		-	

##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산업·중소기업</b>		<b>합 계</b>	<b>85,924,340</b>
72	<b>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①·②)</li> <li>-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6③)</li> </ul>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73	<b>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삭제)</li> <li>-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li> </ul>	소 계	20,618,05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0,618,050
		지방소득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①·③)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 ③ 1·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74	<b>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b>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 §60①)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 감면(50%),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 (전북) 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주민·지방소득세 면제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75	<b>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②) -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76	<b>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④)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6,027,290
		취 득 세	
		주 민 세	1,650,000
		재 산 세	4,377,290
		-	
77	<b>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b>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소 계	1,613,830
		취 득 세	
		재 산 세	1,613,83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p>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p> <p>- (광주, 북구·광산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p>	담배소비세	
		-	
78	<p><b>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b></p> <p>-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p>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79	<p><b>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b></p> <p>-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p> <p>-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p> <p>-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p> <p>-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p> <p>- 산업지식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p> <p>- (인천·광주·강원·전남) 테크노파크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p> <p>- (광주) 광주디자인센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면제</p> <p>-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p> <p>- (제주) 토평공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5년 안에 지상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p> <p>- (강원·경북 문경)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 100%, 3년간 재산세 50% 감면</p> <p>- (대구·경북) 우수향토기업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p> <p>-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경기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고용우수)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p>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산세 50% 감면		
80	<b>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b>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81	<b>담배 수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수출용, 보세구역판매용 담배 등에 대해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1·3호)	소 계	
		담배소비세	
82	<b>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b>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80)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83	<b>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b> - 시장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3)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84	<b>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 -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제주)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강원·충북·경북)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비율(50%)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판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62의2)	소 계	2,067,03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2,067,030
85	<b>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b>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소 계	
		취 득 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등록면허세	
		재산세	
		-	
		소 계	55,598,140
86	<b>매대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대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취득세	
		자동차세	55,598,140
		-	
		소 계	
87	<b>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b>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2·6·12·15·16·17·19·23·24·25·26·27·29, §120①5·11·15·16·19·20·21·22·23·25, §120⑥2·4·9·10·12·13), 50% 감면(조특법 §119①13·28, §120①12·24)(삭제)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등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⑤ 1,2,4,5,6,7호) -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⑦)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	
88	<b>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b>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3·7·10·11, §120①2·6·9·10, §120⑥7·8)(삭제)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④, §120⑤)(삭제)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6호, §57의2⑤ 3호, §57의2⑥)</li> <li>-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li> <li>-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li> </ul>		
89	<b>명목회사에 대한 감면</b>	소 계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조특법 §119③, §120④)(삭제)	취 득 세	
	- 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5년이내 자본 출자·증자 등기시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조특법 §119③)(삭제)	등록면허세	
	-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180의2①·②)	-	
	- (부산·제주 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0% 감면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수송 및 교통</b>		<b>합 계</b>	<b>6,645,800</b>
90	<b>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b>	소 계	5,849,500
	-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취 득 세	
		주 민 세	
		등록면허세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	재 산 세	5,849,5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제한법 §63②) -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한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91	<b>무료도선용 선박 등에 대한 비과세</b> - 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전마용 선박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4호, §145②)	소 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92	<b>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b> -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 제주도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5) -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전남, 광양)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관련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	
93	<b>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b>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5)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94	<b>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b>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	소 계	
		취득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①·②)	-	
95	<b>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b>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 (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96	<b>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b> - 노후자동차를 폐차·양도하고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70% 감면(삭제2010.12.27)	소 계	
		취 득 세	
		-	
97	<b>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b>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형승합차 세율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 계	796,300
		자동차세	796,300
		-	
98	<b>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b>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9)	소 계	
		취 득 세	
		-	
99	<b>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50%) 및 등록면허세 감면(75%) (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70②)(삭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100	<b>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b>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 (대구, 대구 00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충북,충남,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국토 및 지역개발</b>		<b>합 계</b>	<b>1,257,342,190</b>
101	<b>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취 득 세	
		-	
102	<b>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b> - (제주)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조례)	소 계	
		취 득 세	
		-	
103	<b>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b> -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및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비과세 및 대지조성용 부동산·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③)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85㎡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	소 계	
		취 득 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04	<b>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b>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	
105	<b>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b>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3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	소 계	35,540
		취 득 세	
		재 산 세	35,540
		-	
106	<b>산업단지에 대한 감면</b>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소 계	484,265,430
		취 득 세	
		재 산 세	484,265,43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07	<b>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b>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674,336,39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674,336,390
108	<b>기업도시에 대한 감면</b>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재 산 세	
109	<b>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b>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5) -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의 사업용 재산 등 취득세 면제,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9③)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민세 면제,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특법 §121의16) - (서울)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부산) 한국거래소의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 (부산)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 (제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는 일반 주택 세율 적용 - (제주)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4% 적용, 재산세 3년간 25% 감면 - (제주)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4% 적용, 골프장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저율과세 - (제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 (제주) 건축공사 착공 후 부도·자금사정 등에 따라 1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	
		-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를 매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110	<b>개발제한구역 안의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b>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2)	소 계	
		재산세	
		-	
111	<b>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b>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98,704,830
		재산세	98,704,830
		-	
112	<b>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b>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대도시 안에 설립하는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증과 배제(삭제)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	
113	<b>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b>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2②)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5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①)	소 계	
		취득세	
		-	
114	<b>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b>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①)	소 계	
		취득세	
		-	
115	<b>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b>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취득세 및 재	소 계	
		취득세	
		재산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삭제) -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 재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삭제)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4⑦)(삭제)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⑥)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3년간 재산세 우대세율 0.15%(조례) -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조례) -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75% 감면(조례)	-	

##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과학기술</b>		<b>합 계</b>	
116	<b>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b> - 과학관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소 계	
		취 득 세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	

###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국 가</b>		<b>합 계</b>	<b>2,833,816,260</b>
117	<b>국가에 대한 비과세</b>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b>소 계</b>	<b>2,833,066,390</b>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4,150,000
		재 산 세	2,819,345,300
		자동차세	9,571,090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118	<b>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b>소 계</b>	
		취 득 세	
		-	
119	<b>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b>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b>소 계</b>	<b>749,870</b>
		재 산 세	749,870
		지역자원시설세	
		-	
120	<b>국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b> - 국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비과세 (지방세법 §145①2)	<b>소 계</b>	
		지역자원시설세	
		-	
121	<b>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b>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1호, §120① 1호)	<b>소 계</b>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122	<b>국군 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b> -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에 납품하는 담배 및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2호, §54① 7호)(삭제)	<b>소 계</b>	
		담배소비세	
		-	

###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외 국</b>		<b>합 계</b>	
123	<b>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b>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b>소 계</b>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지 방 소 득 세	
		지역자원시설세	
124	<b>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b>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90, §126 3호)	<b>소 계</b>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 방 소 득 세	
125	<b>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b>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b>소 계</b>	
		주 민 세	
		-	
126	<b>주한외국군의 관할구역등에 납품하는 담배소비세 과세특례</b> - 주한외국군의 군인, 주한외국군의 종사자 및 가족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 ① 2호)	<b>소 계</b>	
		담배소비세	
		-	
127	<b>주한미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b>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한미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6)	<b>소 계</b>	
		취 득 세	
		재 산 세	
		-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b>기 타</b>		<b>합 계</b>	<b>73,861,640</b>
128	<b>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b>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b>소 계</b>	<b>13,347,470</b>
		취 득 세	
		재 산 세	13,347,470
		지역자원시설세	
		-	
129	<b>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b>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b>소 계</b>	
		취 득 세	
		-	
130	<b>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b>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별제한법 §73③)	<b>소 계</b>	
		취 득 세	
		-	
131	<b>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b>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b>소 계</b>	
		취 득 세	
		-	
132	<b>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b>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 정부가 5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의 개정·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조특법 §119① 2호, §120① 3호)	<b>소 계</b>	
		취 득 세	
		등록면허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33	<b>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b> - 이전한 건축물의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5호)	소 계	
		취 득 세	
		-	
134	<b>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b>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 ①)	소 계	52,582,730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52,582,730
		-	
135	<b>해외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비과세</b> - 한국외교협회의 재외외교관자녀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91)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 판매하는 담배, 해외 합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4·5·7호, §54②)	소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36	<b>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b>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	
137	<b>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b>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③1호)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2호)	소 계	2,295,650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2,295,650
		지역자원시설세	
-			
138	<b>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b> - 신협 및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5,122,940
		취 득 세	
		재 산 세	5,122,940
		-	
139	<b>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b>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 (경남)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한 감면(추가)	소 계	
		취 득 세	
		주 민 세	
		재 산 세	
-			
140	<b>저축지원을 위한 감면</b>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①) -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89의3①)	소 계	
		지방소득세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7년(결산)
141	<b>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b> - (서울 00구)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를 위하여 경호안정상 별도주거지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 (서울 00구)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1,000분의 1.5 적용	소 계	
		재 산 세	
		-	
142	<b>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b>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512,850
		등록면허세	
		주 민 세	
		재 산 세	
		자동차세	512,850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9-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 해당없음

### 1-9-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 수익형 민자사업(BTO)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단위:억원)

사업명	추진단계	시설유형	제안방식	운영기간 (연)	'17년 투자비			최소운영 수입보장 지급액
					합계 (A+B)	건설 보조금 (A)	민간 투입액 (B)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중	환경	민간제안	20	-	-	-	-

#### ○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단위:억원)

사업명	추진단계	시설유형	실시협약 체결연월	운영기간 (연)	'17년 투자비	'17년 정부지급금		
						소계	시설임대료	운영비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운영중	문화관광	2012.3	20	-	37	28	9
김천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중	환경	2007.7	20	-	70	58	12
합계					-	107	86	21

### 1-9-3. 지방공기업의 현황 : 2개(상수도 공기업, 하수도 공기업)

### 1-9-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2017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현황
계	98,365	120,472	113,960	730	5,782
지방세	76,000	88,992	83,767	700	4,525
세외수입	22,365	31,480	30,193	30	1,257

